

우리 땅 독도

대한민국 정부의
독도에 대한 기본입장

독도는 역사적 · 지리적 · 국제법적으로
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.

East Se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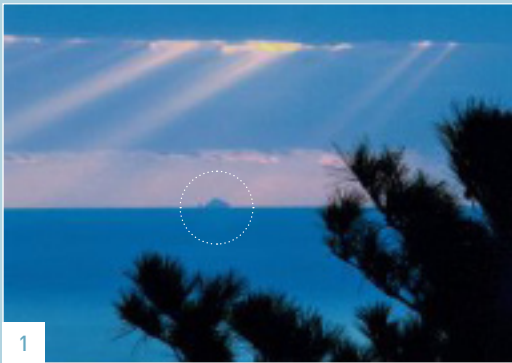
Ulleungdo

Republic of
KORE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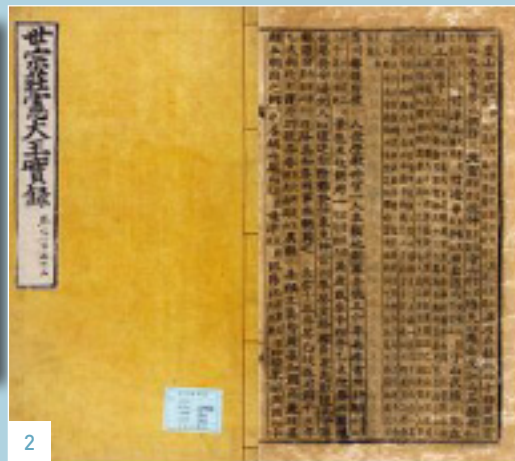
Dokdo

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

-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동해상에 울릉도로부터 87.4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.
- 일찍이 조선 초기에 관찬된 「세종실록」 지리지(1432년)에서는 “우산(독도) · 무릉(울릉)···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” 고 하였다.
- 이를 증명하듯,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며,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.



자료 1_ 울릉도에서 바라 본 독도



자료 2_ 「세종실록」 지리지(1432), 규장각 소장

우리 옛 문헌 속의 독도

-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,
울릉도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,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6세기 초엽(512년)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였다.
- 이 우산국의 판도를 「세종실록」 지리지(1432년)에서 무릉도(울릉도)와 우산도(독도)라고 하였다.
- 그 뒤의 주요 관찬문헌인 「고려사」 지리지(1451년), 「신증동국여지승람」 (1530년), 「동국문헌비고」 (1770년), 「만기요람」 (1808년), 「증보문헌비고」 (1908년) 등에도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를 적고 있어, 그 지명이 20세기 초엽까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.
-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도는 지속적으로 우리영토에 속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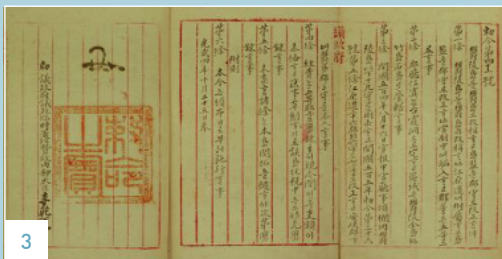
※ 밑줄친 부분을 클릭하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단, 자료 해석은 정부 입장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
일본 에도 · 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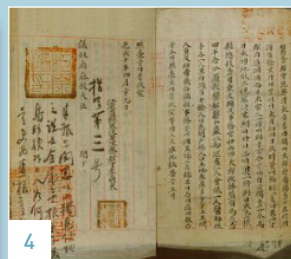
- 조선 숙종대 안용복의 일본 피랍(1693년)으로 촉발된 조선과 일본간의 교섭결과, 울릉도 도해금지령(1696년)이 내려짐으로써 독도 소속문제가 매듭지어졌다.
- 또한 일본 메이지(明治)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(太政官)에서는 시마네현(島根縣)의 지적(地籍)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(內務省)의 건의를 받아 죽도(竹島) 외 일도(一島),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(1877년)을 내렸다.
- 이러한 것들은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.

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

- 20세기에 들어와 대한제국은 광무 4년 「칙령 제41호」(1900년)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(石島),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.
- 1906년 울도(울릉도) 군수 심흥택은 일본 시마네현 관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,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“본군(本郡) 소속 독도가…”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렸다.
- 이는 「칙령 제41호」(1900년)에 근거하여 독도를 정확하게 통치의 범위내로 인식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.
- 한편, 이 보고를 받은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이 '사실 무근' 이므로 재조사하라는 「지령 제3호」(1906년)를 내림으로써,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.



자료 3_ 광무4년 「칙령 제41호」 (1900), 규장각 소장



자료 4_ 「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보고서호외」 (1906) 및 의정부
참정대신 「지령 제3호」 (1906),
규장각 소장

일본의 불법적인 독도영토 편입
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러·일전쟁(1904년 - 1905년)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「시마네현 고시 제40호」(1905년)로 독도를 침탈했다.
-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,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,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.

일러두기

선점(occupation)이란 다른 국가의 주권하에 속하지 않은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(「Oppenheim's International Law」, 9th edition)

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

-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,
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
카이로선언(1943년)에 따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.
- 아울러 연합국의 전시 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 제677호에 따라
독도는 일본의 통치·행정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,
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(1951년)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.
-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.
-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,
독도에 대하여 역사적, 지리적,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우리의 영유권은
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.



자료 5_ 동도 등대 사진

■ 대한민국 정부는

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

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,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
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.

■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

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

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냉철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통한
“차분하고 단호한 외교”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.

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



외교통상부
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